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아이수루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499호
-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 안 이 유

-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될 만큼 피해가 큼
- 특히, 이 가운데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만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됨
- 올해 초부터 서울시에서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일부조항 개정을 통해,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 관련 정의 조항을 규정(안 제1조)
- 나.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 추가 정의 조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충돌 저감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라.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개정¹⁾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2024년 제정('24.7.15)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과 동 조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 방지 디자인권고안」,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하 “환경부 지침”)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실국(부서명)	사업내용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시행('24.7.) - 서울시 야생생물 조례에 조류충돌 저감 내용 반영('22.10.) - 시 전 부서 및 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조류충돌 저감조치 시행 안내
주택실 (건축기획과)	-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디자인' 적용 권고 -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 방지 표준 설계' 자료집 마련('23.1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반영 예정(고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시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권고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 도시철도 역사 야생조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24.5.) -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야생조류충돌 실태조사('23.12.)
피해저감 테이프·필름 부착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버스정책과, 자치구 등

1) 법률 제18908호('22.6.10.,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39호('23.6.9., 일부개정)

- 안 제2조 및 제5조는 법 개정 이전에 수립된 환경부 지침²⁾을 근거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정의(안 제2조제4호~제7호)하고 이 방법들을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하나로 설치·관리하도록 명시(안 제5조)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 이견 없음.

다만, 세부 내용상 법 시행규칙³⁾에서는 무늬 형태를 선형 및 그 밖의 무늬 등 큰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특정 무늬 형태를 사용(의무규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입법형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시장이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디자인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나,

2) 「환경부 야생조류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발체)

- 프리트 패턴(frit pattern)(p.15) : 일반 패턴 유리(건축물 특수유리 적용, 영구적방법)
아무리 강한 반사 현상이 일어나도 조류의 눈에 띄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5×10 규격을 적용한다.
- 유리블록(p.17) : 불투명과 반투명 유리(건축물 특수유리 적용, 영구적방법)
건축 시공 자재로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색과 반투명 유리블록을 사용하고, 채광량도 변화를 줄 수 있다.
- 데칼,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p.19) : 중기적 방법
데칼은 조류 충돌을 막는 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무늬의 스티커를 5×10규격에 따라 유리 바깥쪽에 설치한다. 다만 자외선을 반사하지 못하는 스티커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부착품의 사용 가능 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는 조류 충돌 예방 혹은 저감을 위해 개발된 테이프로 실제 실험을 통해 예방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5×10 규격에 따라 부착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²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을 고려하더라도 민간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책인 만큼 현재 일부 적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효과를 검증한 이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특히, 동 조례 제5조4)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제1항) 법인·단체 등에 위탁 또는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나, 정원도시국은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한 바 없고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면밀한 실태조사 및 검토 이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